

신구조문대비표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<small>[대통령령 제27299호, 2016.6.30., 타법개정]</small>	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<small>[대통령령 제27440호, 2016.8.4., 일부개정]</small>
<p>제12조의2(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) ① <u>법 제9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 이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(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)을 말한다.</u> ② <u>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③ <u>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(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</u> ④ <u>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[본조신설 2002.9.18]</u></p>	<p><삭 제></p>
<p>제26조의4(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<u>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 1. <u>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</u> 2. <u>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</u> 3. <u>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</u> 4. <u>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</u> 5. <u>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·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5.6.30] [제26조의3에서 이동]</u></p>	<p>제26조의4(계약 추정외 통지 내용) <u>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“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,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1. <u>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</u> 2. <u>그 밖에 발주자(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)가 도급한 사항[본조신설 2016.8.4] [중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7로 이동]</u></p>
<p><신 설></p>	<p>제26조의5(계약 추정외 통지 및 회신 방법) ① <u>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</u> 1. <u>내용증명우편</u> 2.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</p>

	<p>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</p> <p>가.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</p> <p>나.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</p> <p>3.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,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(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6.8.4]</p>
<p><신 설></p>	<p>제26조의6(서면의 보관)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,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26조의7(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)</p> <p>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.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.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.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.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·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5.6.30] [제26조의4에서 이동]</p>
<p>제34조의2(하도급계획의 제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<u>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</p>	<p>제34조의2(하도급계획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 - - - -</p> <p>- - 다음 각 목의 사항</p> <p>가.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</p> <p>나. 하도급예정금액(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<삭 제></p>

<p><신 설></p>	<p>----- . <후단 삭제></p> <p>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p>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</p> <p>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[본조신설 2013.6.17]</p>
<p>제8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(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</p> <p>가.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</p> <p>나.·다. (생략)</p> <p>2. ~ 1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----- 신청내용-----</p> <p>-----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7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</p> <p>1.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</p> <p>가.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</p> <p>나.·다. (생략)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</p>	<p>제87조(권한의 위탁 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----- 신청내용-----</p> <p>-----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,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----- 인정-----</p> <p>-----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1999.8.6]	----- ----- [전문 개정 1999.8.6] [제목개정 2016.8.4]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